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799)

제정 관세청고시 제2000-018호(2000. 5.24)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031호(2007.10.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1-001호(2001. 1.12)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8-008호(2008. 2.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2-002호(2002. 1.24)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9-029호(2009. 7.29)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3-038호(2003.12.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9-031호(2009. 8.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5-021호(2005. 7.13)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040호(2010. 6.1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6-009호(2006. 1.25)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0-124호(2010.11.18)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6-043호(2006.10.26)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1-023호(2011. 6.17)
개정 관세청고시 제2007-008호(2007. 4. 1)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2-032호(2012. 8. 2)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4-047호(2014. 5.20)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031호(2015. 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이익 변경 금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3조(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①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7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이하 “불복청구”라 한다)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1. 과세전통지서
2. 보정요구서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령증을 받고 교부할 수 있다.

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
2. 교부장소 및 교부년·월·일
3. 수령자의 주소·성명과 생년월일 및 청구인과의 관계

제6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①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을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여백에 작성자의 소속·

직급·성명 및 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원본대조필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0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의 장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견진술의 신청이 영 제1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는 뜻과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증거자료의 사본) ① 청구인이나 세관장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청구인이나 관계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본은 판독이 용이하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불복청구의 중복) ① 세관장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 둘 이상의 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결정을 희망하는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인이 결정을 희망하지 아니한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심사청구

제9조(관세청장의 처분) ① 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처분”이란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

1. 관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2. 관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3.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따른 처분
4.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5. 그 밖에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처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이의신청이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접수) ①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관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세관운영과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청은 심사청구 접수 시 제12조의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행자는 처음 조사·결정 등 원인 제공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주무 또는 그 후임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세관의 조사(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여 불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수행자는 처음 조사 또는 감사를 했던 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협조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협조자는 의견서 제출, 입증자료 수집 등의 지시 또는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를 접수한 세관장은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를 제4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하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의 청구서 선람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사항 및 접수/처리관리대장 열람으로 같음한다. 다만, 사건 접수담당자는 청구금액 등을 감안하여 별도보고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에 의한 심사청구) ①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인터넷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제공받는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와 정보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통관포탈에 접속하는 방식(이하 “**인터넷방식 심사청구**”라 한다)으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한 심사청구인은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항변서 제출, 의견진술신청 및 취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불복이유 등과 관련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하거나, 즉시 접수세관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방식 심사청구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청구자료가 인터넷통관포탈에 민원신청 되어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인터넷방식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서면방식의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방식의 심사청구와 인터넷방식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 먼저 접

수된 것을 원본으로 본다.

제12조(송부) ①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청구서 1부에(1부는 해당 세관에서 보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세관장 의견서

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서 사본 1부를 해당 조사세관장 등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은 세관장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서면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제4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관세청장은 반대의견서등의 사본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세관장의견서) ① 처분청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용법규, 관련판례 또는 행정심판 결정사례, 유권해석 등을 명료하게 적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답변을 한 다음 관련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일지

라도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으로 세관장의견서(답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직권시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과세전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2. 사실판단이나 세액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3. 불복청구대상 처분 등의 내용·쟁점·적용법령 등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서 이미 인용한 사건이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분청은 관세청 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권시정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직권시정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
3. 직권시정을 하는 경우 유사사건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③ 관세청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직권시정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

권시정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납세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3.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제15조(보정요구)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3. 첨부된 증거자료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6.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심사청구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된 자료 이외에 증거자료나 청구인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국·실장,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국·실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쟁점이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사안으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경우, 품목분류 및 평가업무 담당 소관과(원, 소)는 조회일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청구 처리기간 준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 조사한 사항을 행정정보관리시스템에 성실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① 제15조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 중 검토 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열람자료를 작성하여 청구인 및 제12조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세관장이 3일간 사전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청구사건이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5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하는(이하 “사건조사”라 한다) 담당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상정 전 자료완성 단계에서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 및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우편(또는 FAX)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한 세

관장에게 내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자료 사전열람 실시일부터 3일 경과 후, 사건조사 담당자는 사전열람 결과 제시된 추가 증명자료나 보충의견 등을 심의자료의 조사내용 끝 부분에 명기하여, 심의자료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하) ① 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처분청에 우편, FAX,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9조(결정의 지연) ① 법 제128조제2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조회 중인 경우
2.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업무소관 기관에 질의 중인 경우
3.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심사결정 사례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중한 심의 및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②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

획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및 관세청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47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친 사람으로서 관세사, 변호사, 대학교수, 수출입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관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⑥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심사청구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147조제8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불합리한 법률 및 관행 등의 개선) ①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이나 관행 등이 청구인의 권익을 매우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업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사건조사담당관”이라고 함)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해당 법령 등의 개정 건의 등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사건조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건조사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심사위원회에 개선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 청구인 및 사건조사담당관으로 하되, 사건조사담당관은 청구인이 개선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간이결정) 심사청구가 영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제23조(결정 및 통지) ① 관세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28조제1항 각 호의 결정이 아닌 “재조사” 결정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재조사의 범위를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이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이의신청

제24조(접수 및 송부) ①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는 부서(또는 담당자)와 결정부서(또는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는 부서(또는 담당자)에서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3항, 제5항의 “7일”은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선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관세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수출입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③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해당 재결청의 관세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⑤ 영 제147조제8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14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관세사, 변호사, 대학교수 또는 수출입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5명을 위촉하되, 직능별·직종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관세심사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간사는 해당 재결청의 세관 운영과장으로 한다.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본부세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이의신청 사건은 가능한 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7조제8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결정 및 통지)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28조(접수) 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송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36호서식의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세관장 답변서
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30조(세관장 답변서) 심판청구에 대한 세관장 답변서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견조회 등) ① 세관장은 사건의 쟁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 진행상황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관세청 소관과(원, 소)에 의견조회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 답변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답변서 제출 후 의견회신결과가 도달되었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에 추가 심리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심판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관 과(원, 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② 심판수행자의 지정은 제10조제3항을 준용하고, 1개 업체·동종사항·다수세관 또는 동종사항·다수업체·다수세관 청구건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기관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및 답변서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관련자료를 관세청 및 관련세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검토 결과 또는 자체 판단결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선임수행청을 지정하는 등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지정된 선임수행청 및 관련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사항의 쟁송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세관장(해당 처분부서의 장)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결정서의 내용 중 주문 및 쟁점별 판단요지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원심사청구

제33조(접수) 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감사원 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감사원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송부) ①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세관장 변명서
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
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1항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최초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관세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는 제12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소송제기 사실의 보고)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이미 감사원의 결정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세청장과 감사원장에게 그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결정서 송부)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 심사결정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행정정보관리시스템에 결정서의 내용 중 주문 및쟁점별 판단요지를 입력하고 결정서 전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과세전통지) 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려는 세관장(담당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 또는 과세품질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과세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세전통지는 납세의무자별 1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서별·세목별 세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경정·고지의 유예)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①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당해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청구서 하단의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FAX 등의 방

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송부)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제2항의 기간(3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정기관(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세관장 의견서
2. 과세전통지서
3. 그 밖에 과세전통지의 내용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다른 세관의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행한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 사본 1부를 추가로 조사세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조사세관장은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의견서 서식에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세관장의견서 작성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통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1항제1호의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세관장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통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

터 5일 이내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결정기관) 과세전통지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3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이 경우 영 제143조제4호에서 “동일한 사안”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쟁점·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43조(결정지연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45조(결정 및 통지) ① 결정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통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통지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를 정정하고, 그 결정서를 통지세관장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절차의 이행)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경정·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2. 결정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제47조(지연 결정사건의 처리)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2. 법 제123조에 따른 청구서의 보정기간
3. 청구인이 심사 보류를 요청하는 기간
4. 그 밖에 청구인이 협력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과되는 기간

제7장 보칙

제48조(대장관리) 불복청구와 관련한 각종 대장은 행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에 따른다

제49조(회의록 작성) 불복청구와 관련한 위원회를 주관하는 결정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직권시정 보고 등) ①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문서로 결정기관(세관, 조세심판원,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세관장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감사원 심사청구서
2. 처리전말보고서
3. 시정조치에 관련된 경정서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불복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직권시정을 한 세관장은 청구 일자·주요내용, 직권시정 일자·사유·주요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시정 통지는 경정통지서 또는 환급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전말 보고)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결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기관(세관 또는 관세청)의 장에게 그 처리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관할 일선세관장 및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제기된 관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별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세 불복청구 유형별 사건 접수 **명세**(청구일자,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쟁점물품, 쟁점사항, 청구금액 등 포함한다)
2.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결정일자, 결정유형, 감액 예상 금액 등 포함)
3. 해당 사건의 보정요구 여부(보정요구일자, 보정일자, 보정요구사유 **등을 포함한다**)

제53조(결정례의 활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거나 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결정 사례
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
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관련 실·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판청구 결정례 등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입력을 외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4조(준용규정)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청구 및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4항, 제18조제2항은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만 준용하며, 제21조는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만 준용한다.

제55조(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관세청은 불복청구인과 쟁송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과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불복청구서 및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제출, 불복신청 처리상황과 불복관련 결정례 및 판례 정보제공, 개인별·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한글명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하며 영문명칭은 ‘e-CLAIMS’라 한다.

② 처분청의 사건수행자 및 결정기관의 사건처리자 등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반대의견서, 전문의견, 결정통지서, 처리전말보고서 등을 등록한 때 이 고시에 따른 제출, 접수, 조회, 회신, 송부, 통지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심판원·감사원에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고시 제2000-18호(2000. 5.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행정규칙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관세법시행령제47조의규정에의한심사청구서에관한고시
2. 관세심사업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3. 고지전과세적부심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4. 관세관련불복청구업무처리지침(관세청 고충처리 47520-17호, 2000. 1.12)

부 칙 <고시 제2001-1호(2001. 1.12.)>

이 고시는 2001. 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2-2호(2002. 1.24.)>

이 고시는 2001. 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3-38호(2003.12. 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 12.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8조, 제34조, 제42조의 규정은 2003.12.1. 이후 접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05-21호(2005. 7.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7.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 1의 지침을 폐지한다.

1.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침(심사환급과-646호, 2004. 3. 8.)
2. 확장심사시 과세전통지와 관련한 업무지침(심사환급과-1944호, 2004. 6.16.)

부 칙 <고시 제2006-9호(2006. 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6-43호(2006.10.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고시 제2007- 8호(2007.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1조의2,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규정이 운영되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36조 제2항중 정보협력국장을 감사관으로 변경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42조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및 제4호서식의 결정기간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기간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07- 31호(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과세전통지대장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된 제31조 개정안은 과세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 수작업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8-8호(2008.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제15조의2는 2008.3.1이후 시행되는 위원회 상정 안건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을 “고위공무원은”으로, 제36조 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는”을 “고위공무원은”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44조의 단서 개정규정은 영 제14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147조제1항제1호가 동 고시 개정안의 내용으로 2008년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었을 때 동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③제18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위원 해촉 후 신규 위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09-29호(2009.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09-031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40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고시 제2010-12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대한 적용특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고시 제2011-23호(2011. 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2-32호(2012.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4-47호(2014. 5. 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31호(2015. 8. 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90
--	------	----------	---------

구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한함
	주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청구대상	처분청	세관장	처분유형	[]고지처분 []경정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을 한 날	20 년 월 일(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불복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

「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구분	[]관세사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세관장 의견서(답변서)

1.

2. 청구인의 청구이유

3.쟁점

4.세관장 의견

접수일 : 20 년 월 일

의견서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급	(또는 인)	전화번호 :
	주 무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과 장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직권시정 검토조사서

구 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사건 번호			청구 세액	
과세 개요				
관련 예규 결 정 레 판 레				
검토 의견				
수 행 자 및 확 인 자		세관 과	수행자 주 무 과 장 국장(세관장)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관 부서 검토 의견				

보정 요구서

청구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대리인	성명	
	주소	
보정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보정을 요하는 이유		
보정할 사항		

귀하의 20 년 월 일 불복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관세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정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 세 관 장
(관 세 청 장)

공지사항

-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FAX 등으로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

1. 20 년 월 일 제기된 청구인 ○○○(사건번호 : -)의 관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와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불복청구에 대한 공정·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관세불복청구 심사결정 전 『심의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마련, 2008. 2.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로 제출할 증빙이나 보충할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 . . .까지 아래의 사건조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청구사건의 ○○세관 관세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은 20 년 월 일 시입니다.

※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 및 사전 열람자료는 당사자의 의견을 추가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기관의 서비스행정이며, 동 자료는 “단순 참고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사전열람자료 1부. 끝.

○ ○ 세 관 장

수신자 ○○○, △△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직위(직급) 서명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0 년도

회 관세심사위원회 사전열람 자료



- | |
|--|
| <input type="checkbox"/> 개최(예정)일 : 20 년 ○ 월 ○ 일 ○○ 시 |
| <input type="checkbox"/> 개최 장소 : ○○세관 ○○회의실 |

세 관 관세심사위원회

■ 심의자료 사전열람자료 작성 목차 및 요령

1. 청구개요

- 쟁점물품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명, 모델, 규격 등 기재
(품목분류가 쟁점인 경우에는 기능, 용도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 쟁점
 - 쟁점별 요약 정리
- 청구경과
 - 시간 순으로 주요사항 정리
(특히, 과세전통지 등 절차이행 여부 기재)
- ※ 참고자료
 - 1) 청구인의 청구서
 - ① 불복이유서
 - ② 첨부물 (용도설명서, 카다로그, ...)
 - 2) 처분청(통지세관장) 의견서(답변서)
 - ① 세관장 의견서
 - ② 첨부물 (유사물품 품목분류결정사례, 카다로그, ...)
 - 3) 쟁점사안에 대한 소관기관(부서) 질의 및 회신자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통지세관장) 의견

-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통지세관장)의 의견(답변)을 당사자별 및 쟁점별로 요약 정리

3. 조사내용(* 작성방법)

I. 관련 규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훈령, 예규, 지시(지침 포함) 순으로
- ※ 관련 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되는 법부터 위 순서대로 정리

II. 관련 판례·재결례

- 법원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행정법원) 순으로
- 재결청 : 조세심판원 → 감사원 → 관세청 → 본부세관 → 산하세관 순으로

III. 쟁점사안에 대한 소관기관(부서) 의견

- 쟁점사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 관련 외부기관 및 본청, 본부세관 소관부서 의견
- 품목분류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사항
- 관세평가협의회 등 결정사항

IV. 기타 조사사항

- CDW를 통한 수입실적 분석,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신문조서 일부내용 발췌 등
- 보정요구자료,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

※ 열람결과 추가의견 제시시

V. 심의자료 사전열람후 추가내용(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

불복방법 통지서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귀하가 20 년 월 일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업무 형편상 부득이 하여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결정기간이 경과한 20 년 월 일부터 행정 법원(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월 일

직인

공지사항

본 통지는 귀하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귀하의 청구가 각하되었거나 앞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서

사건번호		관심 제	호
청구인	주 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위대리인	주 소 :		
	성 명 :		
처분청	세관장		

위 당사자간의 심사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이유 : 붙임(사실,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쟁점 및 판단을 기재할 것)

20 월 일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30
------	----------	----------------

구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한함	
	주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동의	※ 본 청구에 대한 진행정보, 세관장의견서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청구대상	처분청	세관장	처분유형	[]고지처분 []경정청구기각처분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	-----------------------------------

불복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종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전자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	---

「관세법」 제13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구분	[]관세사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	------	-----	-----	------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 진행상황표

		접수일		청구인		청구세액	
				대리인		쟁점물품	
처 분 청		수행자	과장 : 주무 : 담당 : (☎)				
		처분원인 제공부서(세관)					
적법여부 등 검토표							
① 세역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분석절차 적법 여부						[]적법, []위법	
②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의 각하 내용 검토 여부 * , 처분존재, 당사자자격, 처분대상여부 등						[]적법, []위법	
③ 과세전통지 이행여부(생략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적법, []위법	
④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쟁점 요약	쟁점	① ②					
	처분 내용	() -처분관련자료, 전심결정내용 검토, 조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 -심사, 심판례, 판례, 법령해석·질의회신 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한 자료 ·작성사례 : 대법원 00두00000, 년 월 일 판결, 공문서 번호 등					
	내용	청구인			처분청		
진행 현황	구분	일자	수행자	비고			
	①	세관장 답변서 제출일					
	②	청구인 반박이유서 제출일					
	③	세관장 반박 답변서 제출일					
	④	심판원 조사관 방문·설명			몇 회		
	⑤	조세심판위원회 참석					
	⑥	(기타)					
동종사건 진행여부	① 동종 건 다수업체 제기시 업체명		업체 및 사건번호 기재				
	② 1개 업체가 여러 세관 제기시 세관명		업체 및 사건번호 기재				
심판결정 전망	(예시) 심판수행자 의견, 심판수행 방향, 직권시정여부 검토 등						
영향분석	관세행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건인 경우 「영향분석서」 첨부						
검토 의견 * 제25조의2	구분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관세청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 내용						

선임수행청 지정검토서

[]개업체·동종사향다수세관, []동종사향다수업체					
관련 사항	처분청 (업체명)		사 건 번 호		청구 세액
쟁점 물품					총액
쟁점 요지					
관련 예규 결 정 령 판 령					
검토 의견	최초원인제공 기관				
수행자 및 확인자	세관 과	수행자 주 무 과 장 국장(세관장)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검토 의견	지정	_____ 세관을 선임수행청으로 지정합니다.			
	검토의견				
		검토(소관) 부서			

과세전통지서

납 세 의 무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정대상 물품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자	
품명 및 규격			

경정이유

- * 근거법령 등 추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수입신고서별 추징예정세액 계산 내역서 등은 따로 붙임

경정·고지 예정세액					
관 세	부가가치세	기재	세목을 기재	가 산 세	합 계

「관세법」 제118조제1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월 일



공지사항

-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우리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통지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사건번호		적부심사 제	호
지 세 관 장			청구금액
청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주문			

이유>

20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월 일

○ 세 관 장
(관 세 청 장)

공지사항

이 결정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관세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

20 년 월 일 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에 한함
	주소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리근거	* 심사결정서 번호 및 관련공문 번호를 기재할 것 *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공문번호를 기재할 것			
처리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처리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할 것			

붙임 : 경정통지서(환급결의서) 1부.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우 전화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주소)	접수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홈페이지 주소 / 공개구분

의견진술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번호	청구일자
진술 신청인	[]대표자, []청구담당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상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관세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유의사항

- ※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관세법시행령 제153조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전 처분 이유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번호		접수일자	
청구기간 중 결정(과세처분) 내용		* 처분(경정고지) 내용 명확히 기재	
이유		* 관세법 제118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142조 각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히 기재	
<p>귀하(사)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 중에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귀사)께서 받으신 경정통지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9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re> graph LR A[경정처분 (이해관계자)] --> B(이의신청 (세관장)) A --> C[심사청구 (관세청장)] A --> D[심사청구 (감사원장)] B --> E[심판청구 (국세심판원장)] B --> C B --> D C --> F[행정소송 (행정법원)] E --> F D --> F </pre> </div> <p>※ 경정처분에 대해 <u>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u>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u>경정(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위 불복청구를 안을 경우 경정처분이 확정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u>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또한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년 월 일 ○ ○ 세 관 장			

제○회 관세심사위원회 개선의견(안)

1. 근거

2. 문제점

3. 개선의견(안)

위 개선의견(안)에 대한 검토의견(향후 처리방향 포함)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위원장

